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2-07

## 부산고등법원

2000. 9. 29. 판결선고	인
2000. 9. 29. 원본영수	

## 제1민사부

### 판결

사건 2000나4722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0. 8. 25.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0. 4. 12. 선고 99가합30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주주총회가 1999. 3. 20.에 한 별지

항소취지 기재의 각 결의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광 제1 내지 9호

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C, D의 각 증언(다만, D의 증언 중 뒤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2-07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

인 D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시 발행한 1주당 금 5,000원인 주식 160,000,000주(수권자본금 8,000억 원)를 비롯하여 현  
재까지 총 43,169,996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10주의 피고 회사 주  
식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1999. 3. 20. 10:00경 울산 동구 E 소재 F회관 예술관에서 별지 기재  
와 같이 상정된 2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4개의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감사보고서와 외부감사인 작성의 감사보고서를 위 주주총회 1주일 전에  
본점 및 각 지점에 배치하였다. 주주인 소외 G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은 소외 H, I은  
주주총회 전날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제25기 감사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 대하여는 등사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외부감사인  
작성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고 한다)는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I이 직접 외부감사보고서를 열람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입장하는 주주들의 사진기와 캠코더 등을 주주총회장에 반입하는 것을 제  
한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주주총회장 입구에 게시한 후 10여 명의 경비원을 배치시켜 소지



품을 검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I, J 등 K단체 소속 주주들은 (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사진기 및 캠코더를 소지하고 입장하려다가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잠시 소란이 있었으나 결국 사진기 및 캠코더를 피고 회사에 보관시키고 입장하였다.

마. 주주총회의 의장인 소외 L(이하, ‘의장’이라 한다)가 영업보고를 하고, 감사인 소외 M이 감사보고를 하던 중, 원고등이 질문을 하려 하였으나 의장은 지금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라 보고하는 시간이라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회사가 상정한 별지 기재 제1호 안건(이하 ‘제1호 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의장의 설명이 끝난 후 주주인 소외 J이 출석주식수 중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 있는지 등의 확인절차를 요구하여 의장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주주인 소외 N은 제1호 결의를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안을 제기하고, 주주인 소외 O은 피고 회사가 P그룹에 금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장이 이에 답변하였으며, 주주인 소외 Q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부당지원건 때문에 금 11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여 이사인 소외 R가 답변하였고, 주주인 I은 위 부당지원건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을 질의하여 의장이 답변하였으며, 주주인 소외 S이 표결로 넘어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고, 한편 원고등이 발언의 기회를 계속 요구하자, 의장은 차후에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해 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1호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여, 위 안건은 출석 주식수 25,107,394주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2-07

24,601,760주(출석 주식수의 97.9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사. 피고 회사는 별지 기재 제2호 안건(이하 ‘제2호 안건’이라 한다)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심의함에 있어, 주주인 소외 T은 위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할 것을 동의하여 재정이 있었고, 주주인 소외 U는 위 안건의 제28조 제1항(이사의 시차임기제)에 대하여, 주주인 소외 V은 위 안건의 제27조(집중투표제 배제)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총회꾼인 다른 주주들을 동원해서 주주총회를 진행시킨다는 이유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제기하여 재정이 있자, 의장은 계속 의사진행을 하면서 불신임동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불신임동의안은 출석 주식수의 97.62%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아.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이 부결된 후, 주주인 소외 W은 원고에게 자신에게 총회꾼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항의하였고, 주주인 소외 X으로부터 다시 승인결의를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에 재정을 거쳐 제2호 안건에 관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표결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원고등은 위 안건의 일부에 대하여만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고회사가 제안한 정관 변경사항은 13개항에 이르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내세워 각 변경조항별로 심의 및 표결을 하는 축조심의방식(이하 ‘축조심의방식’이라 한다)으로 진행하자고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정이 있었다.

자. 한편 원고등은 피고 회사의 제2호 안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신설한 제9조의2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2-07

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5’로, 같은 조 제4항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로 각 변경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개정안인 제27조 제3항 및 이사의 시차임기제를 도입한 제28조 제1항을 삭제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이하 ‘수정동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다.

차. 그러나 의장은 피고 회사가 상정한 제2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여 가결되는 경우에는 원고등이 제출한 축조심의방식에 관한 안건 및 수정동의안이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것으로 하여 일괄표결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제2호 안건은 출석 주식수 25,111,575주 중 24,564,232주(출석 주식수의 97.82%, 총 주식수의 56.9%)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카. 이어, 주주총회의 제3호 안건인 이사 선임의 건과 제4호 안건인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전부터 ①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상법 제44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등



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보고서를 동사하여 교부하지 않았고, ② 원고등은 사진기 및 캠코더를 이용하여 주주총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의 반입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주주의 휴대가방을 검사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다.

(2) 또한 주주총회의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①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서 주주들이 수차례 발언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함으로써 주주들의 발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였고, ② 제1호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도 원고등이 준비한 24개의 질의사항 중 단 2개만 받아주는 등으로 주주들의 발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③ 제2호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그 불신임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계속 진행하였고, ④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원고등에 의하여 앞서 본 축조심의방식 및 수정동의안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축조심의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상정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의 및 표결을 하여야 하고 그 표결에서 일괄상정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리 및 의결을 하고 이것이 부결된 경우에 비로서 제2호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모두 도외시하고 제2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자동적으로 축조심의방식 및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주주총회의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취소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의 진행방식 및 결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회의체의 운영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방식에 따른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는 한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순서대로 판단한다.

(1) 위 주주총회 당시 시행되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외부감사보고서를 상법 제4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448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외부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 제1항 소정의 감사보고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정관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부터 본점 및 각 지점에 비치, 공시하면 족하지 원고등에게 외부감사보고서를 등사하여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



후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2000. 1. 12. 개정되어 제14조 제5항이 신설됨으로써

주주 및 채권자에게 외부감사보고서등에 대한 등본 및 사본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I에게 외부감사보고서를 등사하여 교부하지 않은 대신 열람을 시켜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회사의 정관(제20조) 의하면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을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에 의사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장이 질서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회의장 내에 사진기, 캠코더 등의 반입을 금하고 그 취지를 입구에 게시한 다음, 원고등에게 그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품을 검사한 것은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범위 내의 조치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무리한 가방검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① 주주총회의 진행시 영업보고나 감사보고가 끝난 후 주주들로부터 질문이 있으



면 원칙적으로 이사 등이 이에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고가 진행되는 중에 의장이 원고등 주주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주주는 누구나 반드시 의장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야 하는 한편, 의장은 가능한 한 발언을 원하는 주주들에게 고르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주주들의 발언요청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한정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발언을 한 5명의 주주들 중 K단체 소속의 J이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I이 P그룹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하여 각 질의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원고등의 발언권을 보장하였다고 보이는 점, 의장 및 이사가 J과 I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을 뿐 아니라 추후 서면으로 질의하면 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며 후속조치를 취한 점, 제1호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장이 원고등의 발언을 일부 제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 안건의 심의 방식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법령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동의 및



재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에 관하여 의사진행과 표결까지는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의장은 주주들의 의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안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의 방식 및 표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등 주주에 의해 제2호 안건이 축조심의방식으로 진행할 것이 동의되어 재청되었을 뿐 아니라 수정동의안도 동의되어 재청되었으므로, 의장으로서는 일반적인 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먼저 축조심의방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그 가부를 묻고 나아가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2호 안건을 일괄표결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일반적인 회의체의 운영방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표결방식이라 할 것이다.

다만, 당시 심리할 안건은 제2호 안건과 수정동의안의 2건인 점, 축조심의방식에 대한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다른 2명의 주주에 의하여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승인결의를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던 점, 수정동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이미 제2호 안건 중 제27조와 제28조 제1항은 다른 주주에 의하여 심의되었던 점, 원고가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등으로 회의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어 가고 있었고 축조심의방식 및 수정동의안이 제2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후에 원고등에 의해 동의 및 재청된 점, 제2호 안건이 출석 주식수의 97.82%, 총 주식수의 56.9%의 찬성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2-07

가결된 점에 비추어 보아 축조심의방식이나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였더라도 가결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제2호 안건의 결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제2호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여도 피고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2호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호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2호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하자는 있으나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0. 9. 29.

재판장 판사 유원규 \_\_\_\_\_

판사 구남수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2-07

판 사 박 용 표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2-07

## 주 주 총 회 결 의

1. 제25기(1998. 1. 1. ~ 1998.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의  
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결의
2. 정관일부변경 승인결의 끝.